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공 公 보

제587호

2007년 7월 16일 월요일

차 려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3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60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60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5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608호 경서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7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3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년 7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위 치 : 인천광역시 불로동 일원

2.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조서

가.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364	12	국지 도로	400	대3-58	불로동 135-3	일반 도로	불로동	2007. 7.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생략)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6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 및 제48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공고기간 : 2007. 7. 9 ~ 2007. 7. 23 (15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2. 당사자	성 명 (차량번호)	최광희외 6인 (“불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불임”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점감정바원상복구 명령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4872, FAX 560-4869)		
	기 한	2007년 7월 23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yut2000@seo.incheon.kr)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차량내역

연번	당 사 자		위 반 사 항			비 고
	성 명	주소(사용본거지)	차량번호	위반내용	위반법규	
1	최광희	인천시 서구 공촌동301 조은그린빌라 가동 B01호	86보2331	화물칸 철재격벽 및 철재보호봉 임의 제거함	제34조	
2	김종욱	인천시 서구 심곡동 259-4 극동아파트 108동 308호	38마2424	안전기준위반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사용)	제29조 제1항	
3	홍승목	인천시 서구 가정1동 490-8 202호	50로1815	안전기준위반 (전면 철재범퍼 부착)	제29조 제1항	
4	이두원	인천시 서구 가좌3동 114-4	인천34고 7537	안전기준위반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사용)	제29조 제1항	
5	최길선	인천시 서구 가정1동 176 한송그랜드빌라 401호	인천35머 3497	번호판 봉인탈락	제10조 제3항	
6	조왕택	인천시 서구 가좌2동30-4 진주아파트 10동 1003호	06마9943	안전기준위반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임의사용)	제29조 제1항	
7	이금자외1 인(함호성)	인천시 서구 가좌2동 224-2 하나아파트 A동 508호	05바7602	후미등 착색	제29조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607 호

공 시 송 달 공 고**[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55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21조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공고기간** : 2007. 7. 10 ~ 2007. 7. 24 (15일간)□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성 명	송종길외 2인 (“불임” 위반업체 내역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불임”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제66조		
6. 의 건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4872, FAX 560-4869)		
	기 한	2007년 7월 24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yut2000@seo.incheon.kr)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업체 내역

연번	사업 부분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처분내용 (예정)	비고
1	부 분 정비업	청 솔 자동차 공업사	송종길	공촌동 309-1	임의 양도 · 양수	법 제55조 및 법 제66조	사업정지 10일 및 과태료 100만원	
2	"	매니아 자동차 공업사	박경일	가정3동 566-4	무단폐업	법 제55조 및 법 제66조	등록취소 및 과태료 10만원	
3	소 형 정비업	최 신 자동차 공업사	신상섭	금곡동 278-1,2	무단폐업	법 제55조 및 법 제66조	등록취소 및 과태료 10만원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608호

경서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공고 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구역명칭 : 경서2도시개발구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72번지 일원

다. 면 적 : 34,845㎡(도시개발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라. 지정목적

- 경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남측에 위치한 자연취락지역으로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
-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마.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바. 인구수용계획(변경)

- 기정 : 세대수 164세대, 계획인구 476인
- 변경 : 세대수 257세대, 계획인구 696인

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4,845	34,845	100.0	100.0	
주 용 지	소 계	18,802	19,245	54.0	55.2	
	주 택 용 지	18,802	19,245	54.0	55.2	
공 시 용 지	소 계	16,043	15,600	46.0	44.8	
	공 원	3,066	4,620	8.8	13.3	
	공 공 공 지	454	88	1.3	0.3	
	학 교	3,441	3,441	9.9	9.9	
	공 공 청 사	-	844	-	2.4	
	도 로	8,692	6,217	24.9	17.8	
	주 차 장	390	390	1.1	1.1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3. 공람기간 : 공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5.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2)